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2일, 이상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의
결(수정가결)

제17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상희의원)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

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 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에 따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규정할 경우, 법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신설하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3, 박성훈의원 대

표발의)」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정의조항을 인용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정의조항을 인용함.

수정주요내용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7조제2항제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2항제4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략)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 --.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	4.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5. ~ 8.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 ----- <u>「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u>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